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

■ 김남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167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1
IV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남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2. 11.
3. 회 부 일 : 2025. 12. 12.

II. 제안이유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감시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상거래의 감시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맡기고 있어 가상자산시장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회원이 되는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을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가상자산시장을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여 가상자산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 의무 등을 삭제함(안 제12조 삭제).

나.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임원,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10까지).

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의 회원이 되며,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은 가상자산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4까지).

IV.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 의무 등을 삭제하고, 가상자산시장을 감시하기 위한 가상자산감시원(이하 “시장감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삭제 및 제3장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①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삭 제>

현행	개정안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3장의2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제12조의2(가상자산시장감시원의 설립) ① 가상자산시장을 감시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이하 “시장감시원”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시장감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시장감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2조의3(정관) ① 시장감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사무소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감시원은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의4(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시장감시원이 아닌 자는 가상자산시장감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

현행	개정안
<u><신 설></u>	<u>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 다)을 사용하지 못한다.</u> <u>제12조의5(임원) ① 시장감시원에 9인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u> <u>1. 시장감시원 원장 1인</u> <u>2. 상근이사인 시장감시업무 담당이사 1인</u> <u>3.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1인</u> <u>4. 이사 6인 이내</u> <u>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u> <u>③ 시장감시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시장감시원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 중에서 제12조의10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사원총회에서 선임한다.</u> <u>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원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시장감시원은 2개월 이내에 원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u> <u>⑤ 시장감시원의 사외이사(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장감시원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사원총회에서 각각 선임한다.</u> <u>제12조의6(이사회) ① 시장감시원에 제12조의5제1항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이 경우 사외이사가 이사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u> <u>②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결의하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소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설치할 수 있다.</u> <u>③ 그 밖에 이사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제12조의7(임원의 자격 등) ① 시장감시원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u> <u>② 시장감시원 사외이사의 자격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준용한다.</u>
<u><신 설></u>	<u>제12조의8(정보이용금지 등) ① 시장감시원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② 시장감시원의 상근 임직원은 회원 및 관련 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u> <u>제12조의9(감사위원회) ① 시장감시원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u> <u>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u> <u>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u> <u>2.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u> <u>3.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u> <u>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감시원의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u> <u>1. 시장감시원 회원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u> <u>2. 그 밖에 시장감시원의 경영 및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등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 <u>④ 시장감시원은 사외이사의 사임·</u>

현행	개정안
<신 설>	사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사원총회에서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10(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시장감시원에 임원의 선임을 위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호사협회”라 한다)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11(회원) ①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장감시원의 회원이 된다. ② 제1항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현행	개정안
<신 설>	<u>가상자산시장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u> <u>③ 시장감시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u> <u>④ 시장감시원은 회원으로부터 가상자산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에 대한 시장감시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u> <u>제12조의12(업무) 시장감시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u> <u>1. 가상자산시장의 시장감시, 가상자산시장에서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u> <u>2. 가상자산시장 간의 연계감시에 관한 사항</u> <u>3.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u> <u>4.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가상자산시장 간 연계감시의 결과에 따른 회원에 대한 징계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결정에 관한 사항</u> <u>5. 제12조의13에 따른 가상자산시장 감시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제12조의13(시장감시규정) 시장감시원은 제12조의1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이에 부수하는 사항이 포함된 가상자산시장감시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의14(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① 시장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회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1. 가상자산시장에서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회원이 시장감시원의 업무관련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 회원이 제10조를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 시장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심리 또는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이상거래 또는 업무관련규정 위반혐의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감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 또는 요구를 거부하거나

현행	개정안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거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7.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보고한 자 8. (생략) ② (생략)	<u>제1항에 따른 감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감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14조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u> 제22조(과태료)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에 따른 불공정거래는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자기발행 가상자산 매매 등¹⁾이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호 생략)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자와 서로 짝 후 매매를 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자와 서로 짝 후 매매를 하는 행위

재절차는 “① 이상거래 상시 감시 및 모니터링 → ②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 ③ 조치안 마련 및 금융위원회 의결 → ④ 수사기관 통보·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 조치”로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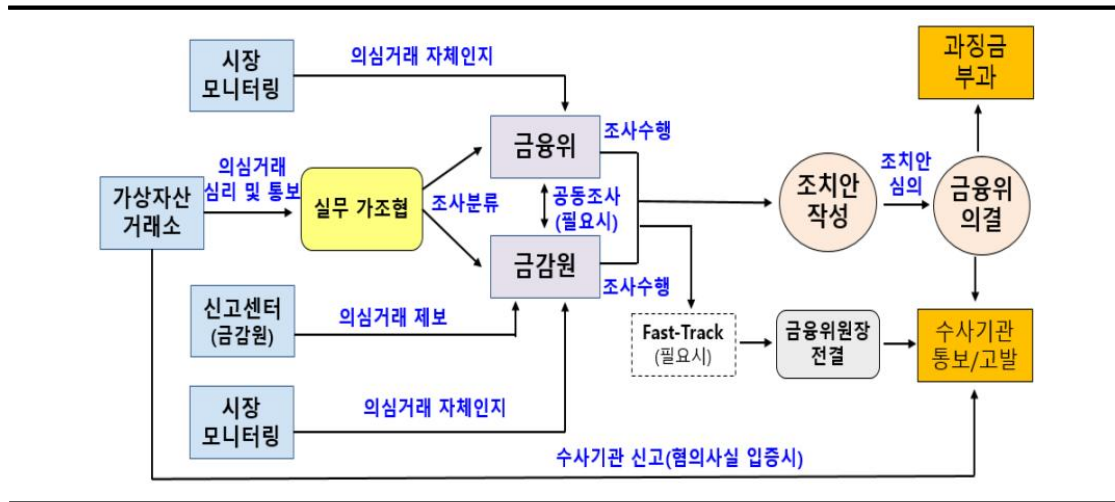
○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 감시를 수행하고, 발견된 이상거래에 대해 심리하여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함.²⁾

○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전반을 총괄·조정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혐의에 대한 직접 조사 업무를 수행함.³⁾

-
3. 가상자산의 매매를 할 때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 ③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 ⑤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약속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불가피하게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경우
-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①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업무를 위탁받아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활동 등을 수행함.⁴⁾

[그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 절차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가상자산거래소가 개별적으로 이상거래 감시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가상자산 시장 운영을 수행하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시장감시기능까지 수행함에 따라

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해상충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가상자산거래소가 회원이 되는 시장감시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이상거래 감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은 시장감시원의 설립, 조직 및 임원, 회원, 업무, 조사·감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에 대한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거래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입법례와 유사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표] 개정안의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자본시장법 유사 조문
설립 (안 §12의2~§12의4)	○ 가상자산시장 감시를 위한 시장감시원 설립	
	○ 법인 형태로 격 부여 및 설립등기 규정	§376
	○ 유사명칭 사용 금지	§379
조직 및 임원 (안 §12의5~§12의10)	○ 원장 1인 등 9인 이내 임원	§380
	○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381
	○ 임원 자격요건 「금융사지배구조법」 준용	§382
	○ 비밀유지 및 특별 이해관계 제한	§383
	○ 감사위원회 설치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	§384
	○ 임원 선임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385
회원 (안 §12의11)	○ 가상자산거래소 회원 의무가입	
	○ 회비 및 시장감시 관련 비용 징수 근거 마련	§387
업무 (안 §12의12~§12의13)	○ 이상거래 감시·심리 및 회원 감리	
	○ 시장 간 연계감시 및 이용자 보호 조치	§377·§403
	○ 시장감시규정 제정 및 회원·임직원 징계 결정	
조사·감리 (안 §12의14)	○ 자료제출 요구 및 관계자 출석·진술 요청	
	○ 감리 비협조 시 금융위원회 조사 요청	§404

□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은 이상거래 감시를 독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이상거래 감시업무의 통일성·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다수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거래의 실시간 감시 및 대응의 신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새로운 법인 신설에 따라 이상거래 감시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 및 법인 운영비 등을 회원인 가상자산거래소의 분담금 등으로 충당할 경우 해당 비용이 궁극적으로 이용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과 같이 시장감시원 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시장감시원에 대한 진입규제 체계, 이상거래 적발 시 금융위원회에 대한 통보 근거,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정보이용금지 의무 등 위반시 제재수단 마련 등을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개정안에 따른 시장감시원은 가상자산시장의 이상거래 감시,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징계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감시원의 설립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진입규제 방식이 인가·허가 등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며, 인적·물적 요건 등 구체적인 설립요건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시장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시장감시원이 이상거래를 적발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시장감시원의 감시·심리 결과가 금융당국의 조사 및 제재절차로 연계되는 체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자본시장법」의 입법례⁵⁾를 참고하여 이상거래 발견 또는 심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개정안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및 시장감시원 임직원의 정보이용금지 위반 등에 대한 제재근거가 미비하므로, 「자본시장법」의 입법례⁶⁾를 참고하여 과태료 또는 벌칙 등의 실효성

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①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⑥ 거래소는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거래소가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한국거래소”, “금융상품거래소”, “금융투자상품거래소”, “증권선물거래소”,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파생상품거래소”, “거래소시장”, “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파생상품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3조(정보이용금지 등) ① 거래소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③ 제63조는 거래소의 임직원에게 준용한다.

확보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① 가상자산거래소 별 거래량 등 유동성의 차이로 이상거래 판단기준⁷⁾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②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법과 연계하여 가상자산거래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상거래 감시 규율체계를 공적 규제에 포섭하는 방향 등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거래소부터 적극적으로 매매체결 내역 등을 제공받아 이상거래를 인지하고 조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에도 개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1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 제301조제5항, 제323조의9제3항, 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42. 제383조제1항(제78조제6항, 제323조의17 및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4.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의8, 제325조,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7) 가격·거래 변동량, 주문관여정도 등